

의안번호	2218359
의 퇴 인	윤종오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5.
추계번호	26A2211

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본계획 수립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9조(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,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“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2조(안전점검의 실시)	○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노후산업단지의 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(이하 “정기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. 이 경우 노후 시설등은 제8조의 안전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(제1항) ○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음(제2항) ○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따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위험의 제거,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사용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음.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(제3항) ○ 관리권자는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. 이 경우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4조(사고조사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할 관리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(제3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노후설비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4항) ○ 관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의 노후설비에 대한 붕괴·파손 등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6	안 제15조(주변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7	안 제16조(지원사업의 종류 등)	○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－ 1. 주변지역 지원사업: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주거·보육·교육·문화·환경·의료·복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 － 2. 특별 지원사업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.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안전시설 개선 및 재난 발생 시 대피도로·시설 구축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 나. 산·학·연 클러스터 구축 또는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다.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업 라.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업	
8	안 제18조(기금의 설치)	○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(제1항) ○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·관리함(제2항)	의무규정
9	안 제19조(기금의 조성 및 용도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1항) － 1. 정부의 출연금 － 2.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－ 3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－ 4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－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자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시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－ 2. 노후산업단지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－ 3. 노후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전 지원 － 4.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지원 － 5.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－ 6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
1	안 제6조(기본계획 수립)	○	—								
2	안 제7조(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—	○ 관리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안 제6조의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								
3	안 제9조(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	X	○ 현재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는데, 제정안의 안전점검 실시 등을 반영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- 다만, 제정안에 따라 향후 연계·추가될 정보의 범위를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2024결산</th><th>2025결산</th><th>2026예산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현행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</td><td>1,047</td><td>49</td><td>15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현행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	1,047	49	150
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								
현행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	1,047	49	150								
4	안 제12조(안전점검의 실시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								
5	안 제14조(사고조사 등)	X									
6	안 제15조(주변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—	○ 관리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주변지역 지원 시행계획은 안 제6조의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								
7	안 제16조(지원사업의 종류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								
8	안 제18조(기금의 설치)	X									
9	안 제19조(기금의 조성 및 용도)	X						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관련 사업의 내용은 안 제6조에 따른 “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”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 - 참고로, 현재 산업통상부가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수행 중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(내역)	2022결산	2023결산	2024결산	2025결산	2026예산 (추경)
산업단지환경조성 (산업단지 구조고도화)	188,000	616,413	276,617	230,228	252,440
산업단지환경조성 (스마트그린산단촉진)	121,839	136,075	115,580	146,250	114,300
탄소설비투자지원 (산업단지 탄소중립지원)	63,000	61,400	109,500	113,700	117,400

자료: 산업통상부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
-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“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”을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때 비용추계 대상은 “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

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”로 하며, 5년마다 수립하므로 추계기간 중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유사 연구용역의 사례를 참고할 때 2027년에 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“발전소주변지역지원 우수사업 발굴 및 장기사업 계획 수립방안 마련”(산업통상부, 2016년, 7,000만원), “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5년, 1억 5,000만원), “스마트그린산업단지 로드맵 구축”(국토교통부, 2023년, 9,000만원) 등이 있음

[표 3]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